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제안이유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한 경우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2020년 12월 30일까지 전파사용료를 감면하던 것을 2022년 12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주파수 사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낮은 주파수 대역폭의 간이무선국 전파사용료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안 제90조제1항)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사업자 간 경쟁촉진과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되,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도매제공받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이외 사업자인 경우 감면율을 2021년 80%, 2022년 50%로 단계적으로 축소

나. 간이무선국 전파사용료 면제 기준 완화(안 [별표 7])

간이무선국의 전파사용료 면제와 관련하여 중심주파수 146MHz 대역 내 점유주파수대폭 8.5kHz에 해당하는 간이무선국 뿐만 아니라 전파의 폭이 8.5kHz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도 전파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는 별표 8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한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8의 가입자 수에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유형별로 도매제공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입자 수에 다음 표의 계수를 곱한 값을 빼고 산정한다.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유형	계수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전기통신사업자	0.5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0.8)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	1

별표 7의 간이무선국의 전파의 폭(kHz)란 중 “8.5”를 “8.5 이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는 별표 8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한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8의 가입자 수에서 도매제공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입자 수를 빼고 산정한다.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는 별표 8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한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8의 가입자 수에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유형별로 도매제공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입자 수에 다음 표의 계수를 곱한 값을 빼고 산정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다른 전기통신사업자 유형</th><th style="text-align: center;">계수</th></tr> </thead> <tbody> <tr> <td>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전기통신사업자</td><td style="text-align: center;">0.5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0.8)</td></tr> <tr> <td>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td><td style="text-align: center;">1</td></tr> </tbody> </table>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유형	계수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전기통신사업자	0.5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0.8)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유형	계수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전기통신사업자	0.5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0.8)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	1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별표 7] 전파사용료를 면제하는
무선국(제89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주파수대(MHz)	전파의 폭(kHz)	안테나공급 전력(w)
선박국	2	2.8	50w 이하
	27	2.8	20w 이하
	156	16	25w 이하
항공기국	100	6	10w 이하
간이무선국	146	<u>8.5</u>	5w 이하
이동국	897	10	3w 이하

부칙

<신 설>

[별표 7] 전파사용료를 면제하는
무선국(제89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주파수대(MHz)	전파의 폭(kHz)	안테나공급 전력(w)
선박국	2	2.8	50w 이하
	27	2.8	20w 이하
	156	16	25w 이하
항공기국	100	6	10w 이하
간이무선국	146	<u>8.5 이하</u>	5w 이하
이동국	897	10	3w 이하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제1
항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